

중국

[판례 분석]

저작물의 수정 정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유형

2026. 05. 06.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미술 저작물은 해당 인물의 외형적 특징이 공유 영역에 속하더라도 그 외의 요소에서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됨. 이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변경 행위가 비록 사소한 수정에 불과하더라도 그 수정이 저작자의 의지에 반한다면 수정권 침해가 인정되고, 그 수정이 저작물이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과 감정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함.

1. 현황

최근 중국에서는 유명 음료 브랜드가 출판사와 제휴하여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업적 활용이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관련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과 충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본문에서는 저명한 화가의 미술 저작물에 표현된 역사 인물 이미지를 무단으로 변형하여 음료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하여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미술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수정·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유형과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봄.

2. 판례소개

| | | |
|-------|------------|---------------------------|
| 사건 번호 | 1심 | (2025)沪0107民初3777号 |
| 관할 법원 | 1심 | 상하이시 푸톈구 인민법원(上海市普陀区人民法院) |
| 당사자 | A 씨, B 씨 | 1심: 원고 |
| | C 회사, D 지점 | 1심: 피고 |

| | | |
|--------|----|--|
| 핵심 쟁점 | 1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씨와 B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이 저작물에 속하는지 여부 2. A 씨와 B 씨의 원고 적격 여부 3. C 회사와 D 지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C 회사와 D 지점의 법적 책임 |
| 판결 결과 | 1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씨와 B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함. 2. A 씨와 B 씨의 원고 적격이 인정됨. 3. C 회사와 D 지점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4. C 회사는 A 씨, B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200,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C 회사는 자사 SNS 계정에 사과 성명을 게재하여 저작권 침해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함. |
| 관계 법령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2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52조 제4호 및 제7호, 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저작권법 실시조례(著作权法实施条例) 제4조 제8호, 제15조 제(1)항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6조 |
| 최종 판결일 | | 2025년 11월 14일 |

(1) 사건 개요

화가 A 씨는 화가 양(杨) 모씨와 1970년대에 루쉰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영원한 진격(永远进击)>(이하 "사건 미술 저작물 1"이라 함)과 이를 단순화한 <루쉰 반신상(鲁迅半身像)>(이하 "사건 미술 저작물 2"라 함)을 공동으로 창작하였음. 양 모씨가 사망한 후 사건 미술 저작물 1, 2의 저작권은 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B 씨와 원고 A 씨에게 귀속되었음. 한편 C 회사와 그 산하 지점인 D 지점은 유명 밀크티 브랜드를 운영하며 제3자 출판사와 협력하여 세계 독서의 날을 기념하는 "루쉰 문학 오마주"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하였음. C 회사와 D 지점은 사건 미술 저작물에 묘사된 루쉰의 이미지에서 손에 든 담배를 밀크티 컵으로 바꾸고 좌우를 반전시키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한 이미지(이하 "분쟁 이미지"라 함)를 제작하였음. C 회사와 D 지점은 분쟁 이미지를 밀크티 컵, 종이봉투, 아크릴 스탠드, 파일백 등에 인쇄하여 전국 수백 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를 공식 위챗 계정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였음. 이에 A 씨와 B 씨는 C 회사와 D 지점의 행위가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 대한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발행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 각색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분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C 회사 및 D 지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A 씨, B 씨의 주장에 대해 C 회사, D 지점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가 공유 영역에 속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이와 같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 사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① 사건 미술 저작물 1, 2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C 회사 및 D 지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사건 미술 저작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

<저작권법> 및 관련 사법 해석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은 문학·예술과 과학 영역에서 독창성을 지니며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말하며 <저작권법 실시조례>에 의하면 미술 저작물은 회화·서예·조각 등 선과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를 가지는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 예술 저작물을 말함. 따라서 독창성은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독립적으로 창작할 것 외에 일정한 예술적 창작 높이에 도달할 것이 요구됨.

본 안건에서 C 회사와 D 지점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 표현된 루신의 짙은 머리카락과 굵은 눈썹 및 흰 장삼(長衫) 차림 등의 요소는 사회 공중이 루신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 인식에 속하는 공유 영역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건 미술 저작물 1, 2는 독창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항변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가 역사 인물을 원형으로 창작된 것이지만 인물 묘사에 사용된 선의 경중, 굵기, 완급 및 필묵 색채의 선택 등에 있어서 창작자의 구상과 전문 기법이 융합되어 있으며 이는 창작자의 예술적 표현 형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일정한 심미적 의미를 지니며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미술 저작물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법원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가 공유 영역에서 유래한다는 C 회사와 D 지점의 항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

2) 저작권 침해 여부

본 안건에서 법원은 분쟁 이미지가 사건 미술 저작물 1, 2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나누어 판단함.

- ① 접근 가능성 및 실질적 유사성
 - a. 접근 가능성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 미술 저작물 1, 2가 분쟁 이미지보다 먼저 창작되었고, 검색 플랫폼에서 "루신 이미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사건 미술 저작물 1, 2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하여 C 회사와 D 지점이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b. 실질적 유사성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루신의 눈썹과 수염 및 장삼 차림 등의 요소가 루신 인물 초상화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제한적인 표현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창작자의 전문 기법과 루신 이미지에 대한 이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창작에 의해 표현된 루신의 자세와 풍모 및 필묵의 농도와 선의 경중 등의 표현은 유일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독창적 표현에 해당함. 분쟁 이미지는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서 루신이 손에 든 담배를 밀크티 컵으로 단순 교체하고 인물의 좌우 방향만 반전시킨 것 외에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사건 미술 저작물 1, 2와 고도로 일치하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됨.

②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a. 복제권

복제권이란 인쇄, 복사, 탁본, 녹음, 녹화, 복제녹음, 복제촬영,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하나 또는 여러 개로 제작하는 권리를 말함. C 회사와 D 지점이 스스로 분쟁 이미지를 자사 직원이 창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분쟁 이미지를 사용한 상품의 등록 및 삭제 관련 이메일과 그룹 채팅 기록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포장재 및 관련 자료 역시 C 회사와 D 지점이 통일적으로 배치, 수정, 개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행위는 분쟁 이미지를 소량에서 다량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복제 행위에 해당하며 복제된 내용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함.

b. 발행권

발행권이란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권리를 말함. C 회사와 D 지점이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건 미술 저작물 1, 2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복제물을 공중에게 판매하거나 증정한 행위는 발행권 침해에 해당함.

c.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이란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제공하여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함. C 회사가 영리적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SNS 공식 계정에 분쟁 이미지를 게시하여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콘텐츠를 취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에 해당함. 다만 D 지점이 분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D 지점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d. 각색권

각색권이란 기존 저작물의 형식을 변경하여 독창성을 가진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로써 이는 원저작물의 기본적인 표현을 유지하면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규정함. 본 안건에서 분쟁 이미지가 사건 미술 저작물 1, 2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었고 새로운 저작물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각색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음.

③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a. 서명권

서명권이란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권리를 의미함. 분쟁 이미지에 사건 미술 저작물 1, 2의 저작자인 양 모씨과 A 씨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명권 침해가 성립함.

b. 수정권 및 동일성유지권

수정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저작자의 의사와 저작물 표현 내용의 일치성을 보호하는 것임. 한편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이 왜곡·변조되지 않도록 그 내용, 사상, 형식 등을 보호할 권리로서 이는 저작물의 표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임. 두 권리는 서로 다른 인격권에 속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모두 수정 행위가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기초함.

따라서 수정의 정도가 크고 작음은 수정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와 반드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님. 비록 사소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 변경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고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어 왜곡 또는 변조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음.

본 안건에서 분쟁 이미지는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서 루쉰이 들고 있던 담배를 밀크티 컵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비록 일부 수정에 불과하나 명백히 저작자의 본래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수정권 침해에 해당함.

또한 이러한 수정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의 사상적 표현을 왜곡하였음. 특히 <영원한 진격>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건 미술 저작물 1의 제목과 창작 주제, 그리고 루쉰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정신과 그가 처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해당 저작물은 담배를 들고 사색에 잠기거나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며 냉엄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는 루쉰의 모습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대한 그의 관심과 고민을 표현하고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분쟁 이미지는 루쉰이 밀크티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루쉰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강인하고 용감한 정신적 핵심과 장엄하고 엄숙한 외적 이미지를 왜곡시켰고 대중이 인식하는 전통적인 루쉰의 이미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나아가 해당 저작물은 1927년 대혁명 시기 루쉰이 중산대학교에서 강의하던 경험을 창작 배경으로 삼고 있어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상과 관념을 담고 있는데 분쟁 이미지는 오락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그 기초가 명백히 다름.

따라서 분쟁 이미지에서 이루어진 변경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를 왜곡·변조한 수준에 이르러 원래 저작물이 표현하고자 한 사상과 감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저작물의 순수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창작된 작품의 저작물 인정 여부와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판단이 주요한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분석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자세히 살펴봄.

1) 역사적 인물을 표현한 미술 저작물의 독창성 판단과 공유 영역의 범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구체적 표현만을 보호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음. 역사적 인물의 외형적 특징은 일종의 사실적 요소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영역에 속하지만 동일한 인물을 소재로 하더라도 각 저작자의 개성과 선택은 서로 다른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표현은 저작권법상 독창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의 판례에서 C 회사와 D 지점은 루쉰의 짙은 머리카락과 굵은 눈썹 및 수염 그리고 장삼 차림 등의 요소가 공유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건 미술 저작물 1, 2의 독창성이 부정된다고 항변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이러한 요소가 루쉰 인물 초상화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고정적 표현에 속하지만 저작자마다 전문 기법과 예술적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고정적 표현을 제외한 창작자의 구체적 표현은 유일성을 갖지 않으므로 독창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 판단은 공유 영역 요소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즉 공유 영역에 속하는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독창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해당 소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독창성이 판단되어야 함.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미술 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도 일치함. 중국 <저작권법>은 미술 저작물의 독창성 요건으로 "심미적 의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자신만의 예술적 개성을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가 양 모씨가 수년간 연마한 국화(國畫) 인물 초상 기법을 활용하여 역사적 사진이나 다른 서양화에서 표현된 루쉰의 이미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루쉰 이미지를 창조한 결과물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창작적 개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 이는 법원이 루쉰이라는 역사적 인물은 그 특성상 공유 영역이 존재하지만 해당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 독창성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전통적인 보호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통적 요소에 독창성을 가미한 저작물의 경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전통적 요소(즉, 공유 영역)와 독창적 요소를 분리하는 기준이 법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타인의 의류 디자인 이미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¹⁾에서 중국 전통 염직 공예 중 하나인 남인화포(藍印花布)를 기반으로 창작한 원고 작품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작품의 점, 선, 반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합이 일정한 수준의 지적 창작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은 "해당 작품이 다양한 농도의 파란색을 선택하여 점, 선, 반점의 조합으로 세 개의 패턴을 만들고, 이를 일정한 곡률로 짜 맞추었으며, 특히 인문학적 함

1) (2025)粵06民終649号

의를 가진 글자 '행복(幸福)'을 그 점, 선, 반점의 조합에 융합시켜 전통 기술에 정서적 표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상 미술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처럼 전통 요소를 기반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전통적 요소와 독창적 요소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사례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전통적 요소와 독창적 요소를 구분하여 후자만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법원의 일관적인 판단 방식으로 볼 수 있음.

2) 저작물의 일부 수정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의 판단 기준

본문의 판례에서 분쟁 이미지는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서 루쉰이 손에 들고 있는 담배를 밀크티 컵으로 교체하고 이미지를 좌우 반전시킨 것에 불과하여 그 수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국부적 수정이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동시에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단의 논리적 구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법리가 포함되어 있음.

먼저 법원은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에 대해 양자가 서로 다른 정신적 권리에 속하지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그 침해 판단 기준은 모두 수정 행위가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에 손해를 초래했는지에 기초한다고 언급하였음. 그리고 수정된 양과 수정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는 필연적 관련성을 갖지 않으며 비록 미세한 수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정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고 저작물의 내용 또는 형식을 변경하여 왜곡의 정도에 이르면 수정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수정의 양적 크기가 아니라 수정의 질적 성격이 핵심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임.

구체적으로 법원은 수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분쟁 이미지가 사건 미술 저작물 1, 2에서 루쉰이 손에 든 담배를 밀크티 컵으로 교체한 행위가 명백히 저작자의 의지에 반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음.

한편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은 더 나아가 해당 수정이 저작물의 사상적 표현을 왜곡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건 회화 및 사건 미술 저작물 1, 2의 작품명과 창작 주제 및 역사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법원은 사건 미술 저작물 1, 2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이 루쉰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관심 및 동란의 시대 배경하에서 당당하게 저항하는 정신적 면모인 반면 분쟁 이미지가 표현하는 루쉰이 밀크티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정신적 핵심과 장엄한 외재적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어 공중이 루쉰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 인식과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법원은 1927년 대혁명 시기라는 특정 역사 시기를 창작 배경으로 하여 저작자가 전달하고자 한 사상과 관념이 분쟁 이미지의 오락적 기초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사건 미술 저작물 1, 2를 명백하게 왜곡·변조한 정도에 이르러 저작물이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감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저작물의 순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음.

이러한 법원의 판단 논리는 출판사가 중국어로 번역된 일본 추리소설을 출판할 때 번역자가 추가한 서문 및 역자 후기를 삭제하고 해당 소설을 출판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²⁾에서 상

2) (2017)沪73民终232号

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이 제시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 기준과 일맥상통함.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수정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이러한 수정이 저작물을 왜곡·변조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저작자가 본래 저작물에서 표현하려는 사상과 감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는지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문 및 역자 후기는 본문과 문체상 및 사상 관점에서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문 및 역자 후기를 삭제해도 독자가 본문 소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번역자가 번역 저작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왜곡·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종합하면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수정을 단순히 저작자의 의지에 반하는 수정과 저작물의 사상과 정신을 훼손하는 수정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수정권 침해와 동일성유지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는 사소한 수정이라도 그 수정이 저작물의 사상적 핵심과 정신적 내용을 변질·왜곡시키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저작물의 제목과 창작 주제 및 역사적 배경 등 저작물의 사상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이 저작물의 사상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4. 시사점

상업적 콜라보레이션 상품에서 타인의 미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해당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저작물이 가지는 사상 또는 정신이 상업적 목적에 의해 변질·왜곡될 수 있으며, 본문의 판례는 이러한 사례에서 수정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 판례
(2025)沪0107民初3777号
- (2017)沪73民终232号
- (2025)粤06民终649号